

출판부 규정

□ 제정 : 1982. 7. 7

□ 개정 : 1989. 3. 1

□ 개정 : 2013. 3. 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출판부는 수원대학교 출판부(이하 “출판부”라 한다)라고 칭한다.

제2조(소재) 본 출판부는 수원대학교 내에 둔다.

제3조(목적) 수원대학교 학내의 모든 간행물과 학술연구서, 일반교양서, 논문집 등의 간행을 통해서 대학의 발전과 학문의 풍토를 조성하고 우리나라 출판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출판부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관장한다.

1. 교재 및 간행물의 출판
2. 학술 연구도서의 출판
3. 학술 논문집의 출판
4. 간행도서의 보관 및 판매
5. 기타 부대 사업

제5조(규정의 변경) 본 규정의 개·폐는 규정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조직과 운영

제6조(기구) 본 출판부에 간행물의 기획·편집·제작 등 고유 업무외에 보관소와 판매소를 둔다.

제7조(조직) 출판부에 다음의 직원을 둔다.

1. 부 장 : 1명
2. 자문위원 : 8명
3. 편집과장 : 1명
4. 대 리 : 1명
5. 사무직원 : 약간명

제8조(부장) ① 부장은 본교 전임교원중에서 총장이 보하며, 출판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직원의 자격 및 역할) ① 편집과장은 출판에 대한 전문적 소양과 경험을 갖춘 일반직으로 보하고 필요에 따라 과장을 보좌하는 대리를 둘 수 있다.

② 직원은 정규직 외에 업무의 필요상 임시직으로 보강할 수 있다.

제10조(자문위원회) 삭제

제3장 운영세칙

제11조(발간) 출판부의 간행물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간행한다.

제12조(인쇄) 출판부에서 간행하는 출판물의 인쇄는 종별과 판별에 따라 신축성 있게 적용되며 다음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1. 학술 연구 도서 : 초판의 경우 정가의 10분의 1(한정 부수)
2. 교양과목 공통교재 : 초판의 경우 정가의 10분의 1.5
3. 논문집 : 별도의 연구지원금 보조

제13조(장정·부수·정가) 모든 간행물에 대한 장정, 부수 및 정가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출판부장이 정한다.

제14조(증정) 모든 간행물의 증정과 배포 부수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출판부장이 정한다.

제15조(중간 금지) 본 출판부에서 간행한 모든 출판물의 편·저자는 해당 출판물과 동일 또는 일부 수정을 가한 유사한 내용의 편·저서를 다른 출판사와 계약하여 출간하거나 복사하지 못한다.

제16조(교재의 편찬 저작 및 간행) 삭제

제17조(교재의 저작권 및 인쇄) 교재의 저작권 및 인쇄는 해당 교재가 폐간되어 더 이상 제작되지 않을 때 자동 소멸된다.

제18조(재정) ① 본 출판부의 운영자금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교비회계로 충당한다.

② 삭제

제19조(회계) ① 본 출판부 회계년도는 본교 회계년도에 준하여 시행한다.

② 본 출판부의 예산·결산 및 사업은 총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제20조(비치서류) 본 출판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 또는 문서에 기입 비치하여야 한다.

1. 회계에 관한 사항 및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비품, 소모품의 보관 및 수불에 관한 사항
3. 출판물의 기획, 제작, 배포 및 판매에 관한 사항
4. 기타 출판부 운영에 관한 사항

제21조(해산) ① 본 출판부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출판부장의 자문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해산이 결정된 때에는 즉시 해당 등록 주무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본 출판부가 해산하는 경우에 그 재산은 수원대학교에 귀속된다.

제4장 교양과목 교재편찬위원회

제22조(편찬위원회) ① 출판부장은 필요시 해당 교양학부 및 학과(부)별로 각각 교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이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출판부장이 총장의 승인을 거쳐 구성한다.

③ 각과 위원장은 위임된 교양과목 교재 편·저자를 위한 위원회를 관장하고 이를 대표하여 본 규정 제 10조에 규정된 자문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23조(편찬기한)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출판부장이 통고한 기한 내에 편찬사무를 종결하고 해당 원고를 지체없이 출판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교정) 편·저작물의 조판·인쇄 과정에서의 교정 업무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원장 책임아래

출판부장이 요청한 기한 내에 종결토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자문 또는 공편·저작) ① 위원장은 교재 편·저작을 위하여 교외 인사의 자문을 필요로 할 때에는 출판부장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교재 편·저작을 위하여 전공상 부득이 교외 인사와 공편 또는 공저를 해야 할 필요를 느낄 때에는 출판부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82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